

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403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2. 12. 21.

발의자 : 운영위원장

1. 제안이유

현재 구성되어 있는 주민조례청구 심의위원회와 관련하여 법령상 위원회 설치 근거 미비 및 과도한 위원회에 대한 정부의 정비방침 등에 따라 주민조례청구 심의위원회를 폐지함으로써 예산절감 및 신속한 절차추진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주민조례청구 심의위원회에 관한 제13조(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~제19조(수당과 여비) 규정을 삭제함.
- 나. 제20조(운영세칙)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제20조의 제목 “(운영세칙)”을 “(운영규정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위원회의 운영에 관한”을 “필요한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제13조(위원회 설치 및 구성) ①</u> <u>의회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이</u> <u>의신청 및 수리 여부 등에 관한</u> <u>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민조</u> <u>례청구 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</u> <u>회”라 한다)를 둔다.</u></p> <p><u>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</u> <u>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</u> <u>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은 다음</u> <u>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</u> <u>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.</u></p> <p><u>1. 서울특별시의회의원 2명</u></p> <p><u>2. 입법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</u> <u>이 풍부한 공무원 2명</u></p> <p><u>3. 입법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</u> <u>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5명</u></p> <p><u>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</u> <u>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</u> <u>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</u> <u>기간으로 한다.</u>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삭 제></u></p>
<p><u>제14조(위원장 등) ① 위원장과</u> <u>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</u> <u>다.</u></p> <p><u>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</u>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삭 제></u></p>

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간사로 하여금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한다.

제15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 신청
2. 법 제1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
3. 그 밖에 주민조례청구 심의 등을 위하여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16조(회의) ① 위원장은 제15조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운영한다.

<삭 제>

<삭 제>

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·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매체로 알려야 한다. 다만,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

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7조(의견청취 등) 위원회는 심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, 전문가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.

제18조(간사)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시민권익담당관이 된다.

제19조(수당과 여비) 회의에 참석

<삭 제>

<삭 제>

<삭 제>

한 위원과 제17조에 따라 참석
한 관계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
서 수당 및 심의안건 검토비용
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
만,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적
으로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
는 그렇지 않다.

제20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 규정
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
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
한다.

제20조(운영규정) -----
----- 필요한 -----

